

제337회 임시회
2015. 2. 5(목)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충주 에코플라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 2. 5 (목)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5년 1월 19일

다. 회부일자 : 2015년 1월 20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1월 27일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가. 제안이유

-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민·관 합동개발을 위하여, 충청북도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회사 명칭 및 사업(안 제3조)
 - 회사 명칭과 사업은 정관으로 정함
- 출자의 방법 및 한도(안 제5조)
 - 설립자본금 출자는 현금 또는 현물로 하며 출자액은 정관으로 정함
- 주주권 행사(안 제6조)
 - 충청북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무원

3.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신선기)

-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충주의 에코폴리스 지구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민·관 합동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충청북도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2014년 9월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 동의안’을 충청북도의회에서 원안의결 하였고 이어, 11월에 충주시의회에서도 원안 의결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가 출자하여 충청북도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 (이하 “회사” 라 한다)란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
2. “출자”란 회사를 설립·운영할 경우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물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 ① 회사의 명칭은 사업명을 표기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따른 부대 사업

제4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충청북도(이하 “도” 라한다)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회사가 증자를 할 경우에는 설립자본금의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를 할 수 있다.

제6조(주주권의 행사)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한다.

제7조(공무원의 파견·겸임) 도지사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타 법령의 적용·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2.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3.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토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지방 일간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 제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검토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위 치 : 충주 중앙탑면 가흥·장천리 일원 (2.2km²)
- 사업기간 : 2013 ~ 2020 (8년간) / 사업비 2,234억원
- 내 용 :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 추진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개발방식 : 제3섹터 개발 (근거 :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 비용 발생 요인

-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자본금
- 지구단위 개발을 위한 용지취득 및 조성공사를 위한 비용
 - 보상비, 공사비, 조사설계비 및 기타 일반관리비 등 비용
- 투자유치, 토지분양 및 매각을 위한 영업활동 관련 제비용

3. 관련조문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을 위한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운영
-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 2.2km²(66만평) / 자동차 전장부품, 신재생에너지, 물류·유통 중심 경제자유구역 건설

나. 추계 결과

- 사업시행자 지정, 공동출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 '15년 2월
 - 지분율 : 도 15%, 충주시 10%, 민간개발 75%
-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 '15. 2월 ~12월
- 착수 및 준공 : '16년 ~ '20년

다. 재원조달방안

- 특수목적법인 설립('15년) : 30억원 (도 4.5, 충주시 3.0, 민간기업 22.5)
-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 및 분양('15 ~ '20) : 2,204억원
 - SPC 명의 대출금 및 준공 2년후 미분양 용지에 대한 출자비율에 의한 상환 및 매입 협약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 총괄부장 유경중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2차년도 (13~14년)	3차년도 (15년)	4차년도 (16년)	5차년도 (17년)	6차년도 (18년)	7차년도 (19년)	8차년도 (20년)	계
세 입	-	3,000	87,063	78,140	45,936	5,798	3,445	223,382
도 비	-	450	-	-	-	-	-	450
기 타	-	2,550	87,063	78,140	45,936	5,798	3,445	222,932
세 출	-	3,000	87,063	78,140	45,936	5,798	3,445	223,382
보 상 비			35,508	17,754	5,918	-	-	59,180
공 사 비			25,424	49,198	30,160	-	-	104,782
조사설계비		3,000	9,862	-	-	-	-	12,862
기 타 비 용			16,269	11,188	9,858	5,798	3,445	46,558
재원 조달		3,000	87,063	78,140	45,936	5,798	3,445	223,382
의존 재원	소 계	-	-	-	-	-	-	-
	보조금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자체 수입	소 계		450	-	-	-	-	450
	지방세		450	-	-	-	-	450
	세외수입	-	-	-	-	-	-	-
지 방 채	-	-	-	-	-	-	-	-
기 금	-	-	-	-	-	-	-	-
소 계	-	-	-	-	-	-	-	-
특별회계	-	-	-	-	-	-	-	-
시·군비	-	300						300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등)	-	2,250 (민자)	87,063 (민자)	78,140 (민자)	45,936 (민자)	5,798 (민자)	3,445 (민자)	222,632 (민자)